

제2657호
2019. 5. 13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공 고

- 제2019-387호 : 세운3-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2
- 제2019-388호 : 세운3-4,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387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로 변경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5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05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세운3-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공람기간 : 2019. 5. 13. ~ 2019. 05. 27. 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 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1구역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입정동 189-1호 일대
- 시행면적 : 4,661.2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 센터시티(주) 대표 박래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신아트빌딩24) (☎) 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12. 28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감소(당초 53,475.52㎡→52,279.23㎡, 감 1,196.29㎡)
- 단위세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, 내부 레이아웃 개선
- 근린생활시설 평면 개선
- 부대복리시설(어린이집 및 경로당, 작은도서관 등)평면개선

4. 관계도서 : 세운 3-1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-388 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호 (2014.3.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38호(2017.11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호(2015.7.30.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9호(2015.7.30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3.16.)로 변경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6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05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세운3-4,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공람기간 : 2019. 5. 13. ~ 2019. 05. 27. 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 ☎ 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4,5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7,032.4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 센터시티(주) 대표 박래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산인텔빌24) ☎ 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7. 30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(당초 76,433.09㎡→76,464.87㎡, 증 31.78㎡)
- 단위세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, 내부 레이아웃 개선
- 임대주택 건립세대 변경(당초 58세대→61세대, 증2세대)
- 근린생활시설 평면 개선
- 부대복리시설(어린이집 및 경로당, 작은도서관 등)평면개선

4. 관계도서 : 세운 3-4,5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나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